

# 증권회사 (법인)지급결제 리스크 보완 제도

2023. 3. 8 (수)



# » 1. 증권회사 자금이체업무 허용 근거 및 이체 대상

## 1) 법률상 업무 근거 및 이체 대상

-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증권회사에 자금이체업무를 허용하면서 자금이체 대상을 '투자자예탁금'으로 명시  
다만, 자금이체업무 대상이 되는 투자자예탁금을 개인/법인 구분없이 허용 (자본법 §40①iv)

제40조(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) ① 금융투자업자(겸영금융투자업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.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20. 5. 19.)

1. ~ 3. (생략)
4.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(제74조제1항의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)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
5. (생략)

### [ 투자자예탁금 보호 장치 ]

- 투자자예탁금은 **고유재산과 구분하여 100% 이상 증권금융에 예치 또는 신탁 의무** (자본법 §74①, 영 §75②)
- 증권금융 예치 또는 신탁시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하며,  
투자자예탁금을 상계·압류하지 못하고, 제3자에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 불가 (자본법 §74③·④)
- **인가 취소, 파산 선고 등의 사유 발생시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 의무** (자본법 §74⑤)
- 투자자예탁금은 **예금자보호대상**이 됨 (예금자보호법 §2)



자금이체 대상이 '투자자예탁금'이라는 점에서 결제 불이행 위험은 없으나,  
i) 차액결제시점과 투자자예탁금 정산시점 간의 시차 및 ii) CMA 자금정산 시간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 
결제자금 '유동성 이슈' 일부 존재

## » 2. 증권회사의 지급결제 리스크 보완 장치 : 결제 시차 등 관련

### 보완장치1) 대행은행을 통한 차액결제방식 채택

- **한은금융망(거액결제망)을 통한 차액결제업무를 은행이 대행**하도록 함으로써  
결제 리스크를 분산시켜 증권회사의 결제 불이행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한 취지 (☞ 법 제정 당시 동 방식을 요구)
- 차액결제대행계약은 **증권회사가 차액결제 리스크 관리능력을 보유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**하고 **한국은행에서 승인**  
(한은 지급결제제도 운영·관리세칙 §75①)



## » 2. 증권회사의 지급결제 리스크 보완 장치 : 결제 시차 등 관련

### 보완장치2) 대행은행의 대행한도 및 순이체한도 설정·관리

#### 대행한도

- 대행은행은 증권회사의 차액결제업무를 대행하는 한도를 설정
  - ※ 실시간 거래 관련 '순이체한도' + '일일 평균순지급금액'(순이체한도 적용 거래 이외)으로 설정

#### 순이체한도

-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차액결제대상(전자금융공동망·타행환공동망·CD/ATM공동망)에 대해 대행한도 범위 내에서 '순이체한도(지급예정금액-수취예정금액)'를 설정
  - ※ 대행은행은 증권회사의 결제 가능규모 등을 고려하여 순이체한도를 설정

#### 관리1

순이체한도 설정시 대행은행이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에 통보 의무  
(한은 지급결제제도 운영·관리세칙 §77)

#### 관리2

순이체한도 소진 단계별(30, 70, 90%) 경고시스템(금결원 및 증권사)에 따라 순이체한도를 관리

자금이체규모가 순이체한도의 일정수준(대체적으로 60%) 도달시

은행에 미리 입금된 증권사 계좌의 자금으로만 송금되는 은행연계망으로 전환\*해서 운영

\* 은행연계망으로 전환시 이체자금을 실시간 결제 처리함에 따라, 해당 이체자금은 증권회사 순이체한도에 영향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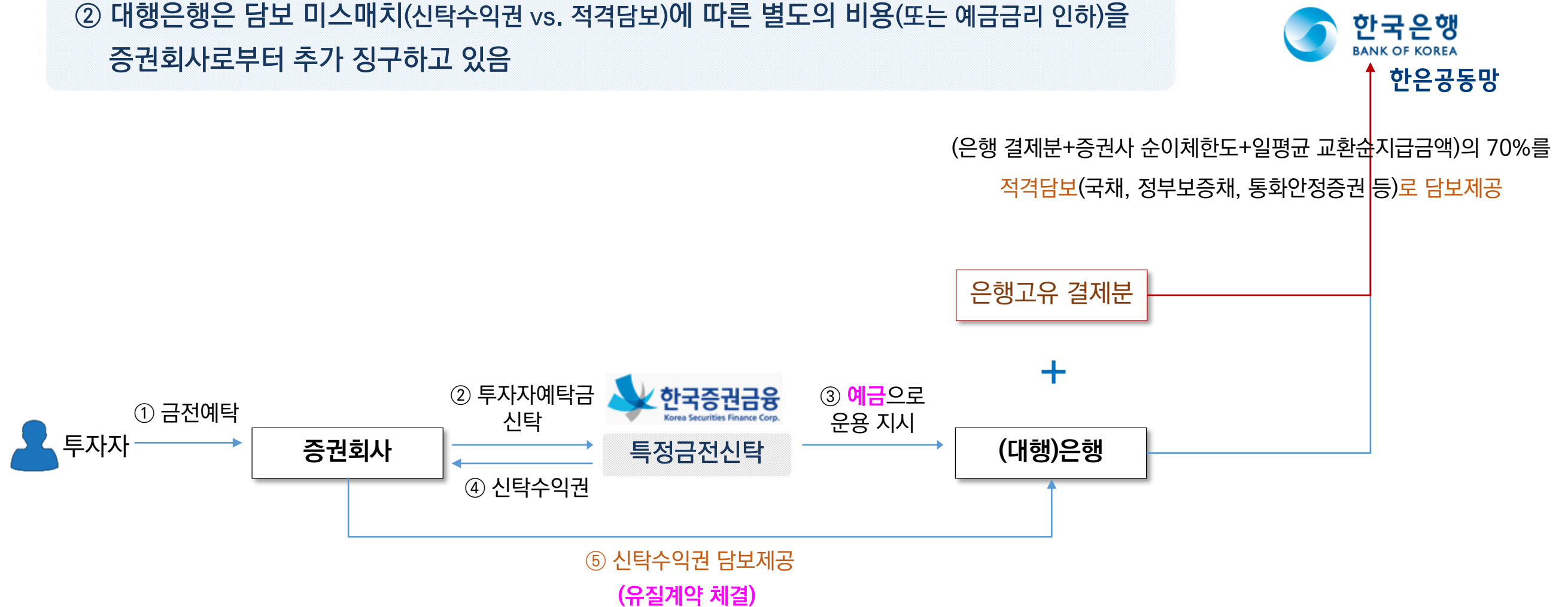
## » 2. 증권회사의 지급결제 리스크 보완 장치 : 결제 시차 등 관련

### 보완장치3) 차액결제 대행한도(100%) 이상의 담보를 제공

- 증권회사는 대행한도 이상(지연배상금, 담보실행 비용 등 감안)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어 처분 · 활용 가능
- 금투업규정(§4-38②)에 따라 증권회사는 투자자예탁금 '신탁수익권'을 대행은행에 담보로 제공 중

#### [ 투자자예탁금 신탁수익권 담보 특징 ]

- ① 대행은행에 전액 '예금'으로 운용되는 특정금전신탁 수익권 ☞ 금투업규정 §4-38②  
→ (유질계약에 따라) 채무불이행시 즉시 상계처리가 가능한 효과적인 담보물로 기능  
☞ 차액결제대행 표준계약서 §5③
- ② 대행은행은 담보 미스매치(신탁수익권 vs. 적격담보)에 따른 별도의 비용(또는 예금금리 인하)을 증권회사로부터 추가 징구하고 있음



## » 2. 증권회사의 지급결제 리스크 보완 장치 : 결제 시차 등 관련

### 보완장치4) 대행은행과의 **일중대출계약** 체결 의무

- 증권회사는 대행은행과 **차액결제대행한도 이상으로 일중(日中) 대출계약을 체결**하도록 정하고 있어, 필요시 결제대금으로 활용 (한은 지급결제 운영·관리세칙 §73, §79)



### 보완장치5) 자본시장법상 증권금융을 통한 투자자 인출·이체 제도



- (평시) 증권금융은 **매일자(오전 9시) 투자자예탁금의 5%를 증권회사에 자금 지원**하고 있어, 필요시 결제대금으로 활용 가능 (자본시장법시행령 §75③iii, 금투업규정 §4-42③)
- (대량인출 상황) 증권회사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**금감원장의 승인을 얻어 투자자예탁금 추가 인출 가능** (자본시장법시행령 §75③iii, 금투업규정 §4-42①)

### 보완장치6)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규정 운영 및 증권회사 검사권 보유



- 한은법(§28,62,81), 자본시장법(§419) 등에 따라, 한국은행은 **증권회사에 자료제출·검사 요구권을 통해 관리·감독**
  - ※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대행계약 승인, 순이체한도 보고·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급결제리스크 관리·감독

### » 3. CMA 자금정산 관련 결제리스크 보완 장치

#### 1) CMA 규모 현황

- CMA 계좌 전체 잔고('23.2월말 기준)에서 **법인 CMA 잔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15.8%에 불과**

※ 2014년 이후 현재까지 CMA 법인 잔고비중은 14~15% 내외를 유지

운용대상	취급 증권회사수	개 인		법 인		합 계(조원)
		잔 고(조원)	비중	잔 고(조원)	비중	
RP형	22	21.9	91.8%	1.9	8.2%	23.9
MMF형	12	2.3	95.4%	0.1	4.6%	2.4
발행어음형	4	11.4	90.4%	1.2	9.6%	12.6
증금(예수)형	14	14.5	70.3%	6.2	29.7%	20.7
합 계	-	50.2	84.2%	9.4	15.8%	59.6

#### 2) CMA에서 발생 가능한 일부 결제리스크 요인

- CMA는 **‘고객 자금이체 지시’** → **‘금융투자상품 환매 및 매도대금 계좌 입금’** → **‘자금이체’** 과정이 동시 실행  
(투자자예탁금으로 전환)
- 실시간으로 매도대금을 회수 가능한 발행어음형 · 증금(예수)형 CMA와는 달리,  
**RP형, MMF형의 경우는 고객계좌 입금 시점과 매도대금 회수 시점간 일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음**

(RP형) 고객이 자금이체 요청시, 증권회사가 우선 고유자금으로 RP채권을 매입하고 고객계좌에 입금  
→ 증권회사는 채권을 매도하여 T+1일 17시에 매도대금 회수

(MMF형) 증권회사가 고유분으로 매입하거나, 환금성이 높은 MMF 담보대출을 통해 고객계좌에 입금  
→ 증권회사는 당일 자산운용사에 환매 요청하고 T+1일에 매도대금 회수

## » 3. CMA 자금정산 관련 결제리스크 보완 장치

### 3) CMA 결제리스크 보완 장치 등

- 2009년 7월 이후, 금융위는 CMA 유동성 관리 방안(CMA 업무 관련 모범규준 등) 마련 · 시행

- (RP형)
- ① 자기자본, 유동성 확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RP 운용한도 설정
  - ② RP형 CMA 잔고의 5% 이상의 현금성 자산 유지 + 전월 순증액의 3~7% 별도계좌 관리
  - ③ 편입 채권의 평균만기 6개월 이내 유지 (①~③ 금투협 CMA 업무 관련 모범규준)
  - ④ RP 매도시 편입채권비율 105% 이상 유지, RP 편입채권의 신용등급 A이상 유지 (금투업규정 §5-21)

- (MMF형)
- ① 편입채권 신용등급의 상위 2개 등급 유지
  - ② 분산투자비율 유지(동일종목 1등급 5%, 2등급 2% 이내) 강화
  - ③ 잔존만기 75일 이내 유지
  - ④ 유동성 자산 보유 의무화(1일 이내 만기: 10%, 7일 이내 만기: 30% 이상) (①~④ 금투업규정 §7-15 ~ §7-9)

» 현재도 법인 CMA 투자 · 이체가 가능함에도 잔고가 미미한 수준이며,  
증권회사가 개인 지급결제업무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CMA에서 발생한 결제 안정성 이슈는 전혀 없었음

✗ 증권회사에 대해 법인지급결제를 허용하더라도, RP형 CMA 현금성자산 보유, 만기 불일치 해소 등 운용상의 이유로 CMA 규모를 대폭적으로 증가시킬 수는 없음



## » 4. 동양증권 관련 지급결제리스크 점검

### 1) 2013년 동양증권 이슈 진행 경과

- 2013.9월 중순, 동양그룹 사태로 인해 동양증권에서 투자자의 자금인출 대폭 증가

- '13.9.17~9.30 기간 중 대량의 자금이체(인출) 지시에도 **소액결제망 직접 참가 + 은행 연계망 병행 유지**를 통해 자금이체를 무리없이 수행

\* 은행별로 상이하나 통산 23:00~00:30 시간 중 30분 내외

- 다만, '13.9.23일 지급결제 규모가 순이체한도에 근접한 시점이 **은행연계망 시스템 clearing time\***과 겹치면서 (은행연계망으로 전환이 불가하여) 일시적으로 한도에 도달하였으나,

→ 은행연계망 clearing time이 종료(00:30)되면서 **보완장치 2** 은행연계망 전환을 통해 자금이체 업무 정상 수행

- 동양증권은 투자자들의 일중 대규모 자금인출에 대응하기 위해

**보완장치 5** 금감원장 승인을 통해 '13.9월 중 3차례에 걸쳐 약 2조원의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에서 조기 인출

### 2) 지급결제 리스크 등에 대한 평가

» 동양증권 대량 인출사례에서도 **투자자예탁금이 지급결제 대상이 됨에 따라 근본적인 결제불이행은 없었음**

다만,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**결제대금 유동성에 일부 어려움**이 있었으나,

**지급결제 도입 초기부터 설정한 '리스크 보완 장치'를 통해 결과적으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례**

# 감사합니다

---



금융투자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!